

#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안전보건관리 내규

제정 2024. 7. 30. 내규 제9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보건업무,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인력, 제도 등에 대한 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책임)**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의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을 준수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고 사고 및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때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

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안전 수칙을 충실히 수행하고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안전·보건기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안전보건조직을 둔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대표이사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대표이사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1조(교육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29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교육
2. 채용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4. 특별교육
5. 안전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6.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 대상자, 교육 시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방법)** ①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보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 과정 및 내용
4. 교육 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장 안전관리

**제15조(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보건 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① 관리감독자는 시행령 제70조 별표20에 따른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안전인증)** ① 관리감독자는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 장치·보호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8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법 제93조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안전점검)**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상태나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표지)**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보관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 부서담당자, 근로자 등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모든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제5장 보건관리

**제24조(근로자의 건강진단)** 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②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과 진단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5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 제186조 별표21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세부 사항 등은 법 제125조 및 시행규칙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에 따른다.

**제26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 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는 관계자 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유해물질 표시)**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28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이사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법 제138조 제1항 및 시행 규칙 제220조에 따른 질병 등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 또는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건강장애 예방조치)** ① 이사장은 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근골격계 질환 관리 및 유해요인 조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고,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알리고, 작업환경 개선 등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보건수칙)** 보건수칙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은 “보건”으로 본다.

## 제6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제33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해야 한다.

**제34조(도급 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사장은 도급, 용역, 위탁시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재단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5조(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감독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에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사고원인,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응급조치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 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⑤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사고 보고서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등 관련 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장 위험성평가

- 제37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평가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제38조(위험성평가 실시시기)** 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재단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 이내 실시
  2.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3. 수시평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 가. 사업장 건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나.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바.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9조(위험성평가 절차)** ①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0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1조(기록·보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의 기록 최소 보존기한은 제4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9장 보 칙

**제42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 할 수 있다.

**제43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법 제164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른 서류는 해당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44조(안전 · 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 · 보건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체제

